

#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2월 4일 정영태의원등 26인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2월 12일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빗물이용 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.(안 제3조)
  -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·시행
  - 대단위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공건축물 건축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·반영
  - 물 다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 적극 권장
-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권장 대상을 정함.(안 제4조)

- 공공건축물·공공시설 및 신축되는 학교건축물로서 지붕 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
-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
-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
- 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확인, 시설기준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- .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.  
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우리시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대상 시설은?	○ 수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관 및 운동장등은 의무 사항이고 조례안 4조에 의거 권장하고자함.
○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?	○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할 수 있음

##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97호
의결 년월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발의년월일 : 2007. 12. 4.

발 의 자 : 정영태의원등26인

## 1. 제안이유

-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빗물이용 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.(안 제3조)

-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·시행
- 대단위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공건축물 건축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·반영
- 물 다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 적극 권장

나.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권장 대상을 정함.(안 제4조)

- 공공건축물·공공시설 및 신축되는 학교건축물로서 지붕 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
-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
-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

다. 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확인, 시설기준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.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##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빗물이용시설”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·조경용수·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“대단위개발계획(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)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,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·주택재개발사업·주택재건축사업·도시환경정비사업,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대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야 하며,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

로 권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장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·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계 단계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1.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·공공시설 및 신축되는 학교건축물로서 지붕 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
2. 제2조의 대단위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
3.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
4.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

제5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)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물·시설물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
2. 별지 제1-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개요서
3.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
4.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산출 근거 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제6조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빗물이용시설의 확장
2.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중단
3. 빗물이용시설 소유자의 변경
4.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

④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와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

제6조(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)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은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
제7조(빗물이용시설의 관리)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 관리인으로 한다.

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할 것
2.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에 “빗물 사용” 표시를 부착할 것
3. 빗물의 사용량, 누수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최적의 이용환경

이 유지되도록 할 것

4.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빗물사용량,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, 청소일시 등을 기록할 것

5.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할 것

제8조(수도요금의 감면) ①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아 설치를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빗물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에 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에 따라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침을 하고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에서 해당 월분의 빗물사용량에 대한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를 발급할 때 감면한다.

④ 시장은 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

1. 가정용: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
2. 산업용: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

3. 일반용: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

4. 전용공업용: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

⑤ 빗물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,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.

⑥ 제4조에 따른 설치권장대상 규모 미만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빗물사용량의 인정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1.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

2.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

3. 누수된 빗물사용량

제10조(감면 수도요금의 환수)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1호서식]

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					
1. 건축장소					
2. 설계자		주소: (전화번호) 성명:			
3. 건축물 개요	명칭		부지면적	m <sup>2</sup>	
	주용도		건축면적	m <sup>2</sup>	
	층수		연면적	m <sup>2</sup>	
	구조		공사종별	신축, 증축, 기타	
4. 공사에정일	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5. 수도 계획	일일최대 사용량		5. 빗물 계획	시설용량	
	급수관 구경			일일최대 사용량	
	연간 총생산량			연간 사용량	
	기타			사용용도	
7. 처리시설 개요		처리시설의 공정구성 기록			
<p>「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건축주 주소: (전화번호: 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성명: (인)</p> <p><b>부천시장 귀하</b></p>					
<p>&lt;첨부서류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빗물이용시설 개요서</li> <li>2. 빗물이용시설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</li> <li>3.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산출 근거 서류</li> </ol>	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[별지 제1-2호서식]

빗물이용시설 개요서						
1. 건축 장소						
2. 설계자	주소: (전화번호) 성명:					
3. 건축물 명칭		5. 연 면 적	m <sup>2</sup>			
4. 주요 용도		6. 급수관경	mm			
7. 공사 예정일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
8. 사용량	m <sup>3</sup> /일					
9. 원수	종 별	오수, 잡배수, 기타		10. 시설	용 도	
	수 량	오 수	m <sup>3</sup> /일		시설용량	
		잡배수	m <sup>3</sup> /일		시설면적	
		기 타	m <sup>3</sup> /일		설치위치	
11. 처리 시설 개요	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(첨부)					
<p>「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개요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건축주 주소: (전화번호: 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성명: (인)</p> <p>부천시장 귀하</p>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			
시 설 설치자	주 소		
	성 명		
	연 락 처		
시 설 설치내역	시설위치		
	시설용량	m <sup>3</sup> /일	
	사용용도		
	설치비용	원	
	착공일자		완료일자
<p>「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」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부    천    시    장 (직인)</p>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[별지 제3호서식]

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		
시 설 명:		
년 월 일		
점 검 항 목	점 검 결 과	조 치 사 항
저수조 수량		
빗물사용량		
누수 여부		
계량기 작동여부		
청소일시		
비 고		
담 당 자	(인)	(인)
책 임 자	(인)	(인)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